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

— 『군산농사월보』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 규 수

I. 머리말

III. 군산농사조합의 활동

II. 군산농사조합의 설립

IV. 맺음말

I. 머리말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우위권을 장악하고 ‘제국’으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 한일의정서(1904년 2월), 제1차 한일협약(1904년 8월), 제2차 한일협약(1905년 11월)을 연이어 한국에 강요하면서, 일본은 동아시아 지배력 강화의 초석을 다졌다.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지배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광범한 한국 이주를 통한 인적·물적 토대의 장악도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였다. 식량과 원료공급지로서의 한국의 식민지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한편으로 과잉 인구의 배출지로 주목하여 일본인의 이주식민정책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63617).

1) 일본은 러일 전쟁 직후 1904년 5월말 원로회의와 각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한방침 및 대한시설강령’(對韓方針並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을 결정하였다. 이 가운데 ‘척식’ 항목에서는 농업식민정책의 기초를 “한국에서 일본인 기업 중 가장 유망한 것은 농사이다. 본래 한국은 농업국으로 식량과 원료품을 일본에 공급했고, 일본은 공예품을 공급하였다. 생각건대 앞으로도 양국의 경제관계는 이 원칙 위에서 발달해야 한다. 또 한국은 토지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 많은 일본인 이민을 충분

그러나 일본의 정책적 구상은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제한되어 순탄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1876년 개항 이후 한국의 내륙지방을 개방해 농업 식민을 추진하려던 일본의 의도는 외국인의 토지소유 그 자체를 제한한 한국 정부의 조약과 여러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외국인에게 토지소유가 처음으로 허용된 것은 1883년의 ‘한영수호통상조약’에 이르러서였고, 이 조약은 ‘최혜국 대우규정’에 의거해 모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개항장 밖 10리 즉 4킬로미터 범위 내로 제한되었고, 한국정부는 통상조약과 관계없이 외국인에의 토지 매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개항장 밖 10리 이외의 토지 소유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었다.²⁾

또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정은 한국사회 내부의 관행, 예를 들면 당시의 지권인 문기(文記)의 구입 방식과 등록 수속 과정에서 촌락의 중개인 등의 존재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야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지주는 식민지 권력의 비호 아래 방대한 토지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권의 이중 매개로 혼란이 가중되었고, 법적 소유권의 확정 과정에서도 많은 장애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순차적으로 국정을 장악해 나갔지만, 지방에서는 항일 의병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치열한 저항 앞에 현실적인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식민열’의 고양이

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우리 농민을 한국 내지에 많이 들여보낼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의 초과인구를 위한 이식지(移植地)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족한 식량공급을 증가시켜 소위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外務省, 「對韓方針並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日本外交文書』 37-1, 1904, 355 쪽).

- 2) ‘한영수호통상조약’ 제4조는 다음과 같다. 즉 “영국인 조계 밖에서 토지가옥을 임차하거나 혹은 구매할 때에는 조계로부터 한국 거리로 10리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10리 밖의 외국인 토지소유를 법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한 조약과 법령은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국권이 약화됨에 따라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였다. 특히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인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상태였다.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합법화되기 이전인 청일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 별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적 수단과 편법에 의존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淺田喬二, 『(増補)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東京, 龍溪書舎, 1989; 李圭洙,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 東京, 信山社, 1996 등을 참조.

라는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한 일본인들은 한국강점이 실현되기까지 심리적으로도 유동적인 상황에 직면하였다. 일본인 지주들은 자구책을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³⁾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주목받았다. 일본인 자본가의 한국 진출 과정을 둘러싼 실증 연구를 통해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토지 투자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⁴⁾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인 자본가의 한국 진출 과정과 식민지 지주로의 변신 과정, 소작제 농장 경영의 실태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본인 지주의 토지 집적 과정은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민간(회사)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광범위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그들의 소작제 농장경영 방침은 결과적으로 대지주 중심의 왜곡된 농촌 사회 구조를 심화시켰고, 지주 소작 관계도 소작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루어졌음이 강조되었다.⁵⁾

-
- 3) 러일전쟁 이전부터 각 지방 부현(府縣)은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한국농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식민회사 및 농업조합을 설립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회사나 조합에게 농업이민의 장려를 위해 이주자 보조, 회사 보조, 영업자금 차입보증, 이익배당 보조, 모범농장 경영보조 등 각종 명목의 보조금을 지불하였다. 1906년 7월 현재 각 이사청 관내의 농업 및 농업관계 회사와 조합에 대해서는 統監府農商工部農林課, 『韓國ニ於ケル農業ノ經營』, 1907, 41-42쪽 참조.
- 4) 일본인 지주의 한국 진출에 관한 사례 분석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變貌過程(上)」, 『農業總合研究』 19-4, 1965;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變貌過程(下)」, 『農業總合研究』 20-1, 1966; 田中喜男, 「石川縣農業株式會社(資料紹介)」, 『北陸史學』 15, 1967;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東京, 御茶の水書房, 1968; 田中喜男, 「明治後期『朝鮮拓殖』への地方的關心-石川縣農業株式會社の設立を通じ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1968; 山崎隆三, 「地主制衰退期における一小地主の植民地地主への轉化」, 『經濟學雜誌』 64-23, 1971;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存在形態-石川縣農業株式會社の事例分析-」, 『朝鮮歷史論集』 下, 東京, 龍溪書舍, 1979; 森元辰昭, 「日本人大地主の植民地(朝鮮)進出-岡山縣溝手家の事例-」, 『土地制度史學』 82, 1979; 森元辰昭・田中愼一, 「朝鮮土地經營の展開」, 大石嘉一郎編, 『近代日本における地主經營の展開』, 東京, お茶の水書房, 1985; 千田稔, 「華族資本としての細川家の成立・展開」, 『土地制度史學』 116, 1987.
- 5) 대표적인 저서로는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旧植民地地主制』, 東京, 御茶の水書房, 1968; 李圭洙,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 東京, 信山社, 1996; 주봉규, 『근대 지역농업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홍성찬 편,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수리조합, 지주제, 지역 정치』, 서울, 해안, 2006; 하지연, 『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구체적인 토지집적 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함과 동시에 일본인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토지매매 수속의 변화과정,⁶⁾ 그리고 매수 주체로서의 국가, 현, 민간(회사) 등의 토지집적방식과 진출지대(예컨대 기간지와 미간지 등의 특징)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매수 주체와 진출지대의 차이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방식과 매수 이후의 농장경영의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⁷⁾

이하에서는 이를 위해 1904년 5월 전북 군산에 설립된 군산농사조합의 설립과정과 활동내용, 그리고 그 해산과정의 검토를 통해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정의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동 조합이 발행한 『군산농사월보』를 중심으로 개항장과 거류지를 중심으로 토지를 집적한 개별 지주의 움직임과 군산농사조합과 같은 지주단체의 특징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⁸⁾ 일본인 자본가의 불법적 농업침탈이라는 단선적 구도로 설명되어왔던 기존

하 식민지 지주제 연구-일본인 회사지주 조선농업주식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혜안, 2010 등을 참조.

- 6) 종래 연구에서는 일본인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법률적 근거로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의 시행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의 토지매매계약과 소유권 확인수속이 지역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관계 법령의 제정 과정과 실시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1910년대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서 언급할 예정이다.
- 7) 필자는 일본인의 토지집적과정의 특징과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지주경영의 차이나 소작계약조건, 소작인의 대응양식의 상위점 등을 기준으로 ‘기간지형 지주’와 ‘미간지형 지주’라는 지주유형구분을 상정하고 양 유형의 토지집적과정을 구체적인 사례에 의거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李圭洙,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 東京, 信山社, 1996 참조.
- 8) 군산농사조합의 설립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裴民植, 「韓國・全羅北道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形成-群山農事組合を中心に」, 『農業史研究』 22, 1989; 李圭洙, 「日本人地主の土地集積過程と群山農事組合」, 『一橋論叢』 116-2, 1996 참조. 군산농사조합은 설립과 동시에 1904년 8월 “군산지방에서의 농사 발전에 따라 농사조합의 사업도 점차 실마리를 찾고 있음으로 이에 월보를 발행하여 우리 조합의 중요한 사건과 조합원의 경영과 관련된 농장의 작황 등을 보고하여 농사개선에 도움이 되자”(「本組合創立以來の成績」, 『月報』 1, 1쪽)는 취지 아래 『군산농사월보』를 발행하였다. 이 글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 조합이 발행한 『군산농사월보』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수정 가필한 것이다.

의 관점을 넘어 당시의 토지소유관행과 이중매매의 문제, 한국 농민이 일본인 지주를 바라보는 시선, 한국 농법에 대한 일본인 지주의 재평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 소작제 농장경영이 철저한 경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군산농사조합의 설립과 활동, 해산과정은 러일전쟁 직후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정과 소작제 농장경영의 추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II. 군산농사조합의 설립

1. 배경

청일전쟁 이후 한국 쌀·대두의 수입과 면제품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본의 자본주의 발달에서 한국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다. 개항 이후 서해연안 목포(1897년)와 군산(1899년) 등지에 개항장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한국의 곡창 지대를 배경으로 일본인의 진출과 대지주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호남평야를 배후지로 두고 있는 군산 지방은 조선시대 이래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큰 주목을 끌었고, 따라서 일본인 거대지주의 밀집 지대이기도 하였다. 1904년 5월 전북 군산에 설립된 군산농사조합은 개항장 군산을 거점으로 비옥한 곡창 지대에 토지소유권과 저당권을 획득한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방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일본인 지주의 토지 매수는 한국에 대한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인 자본가도 한국에 진출할 경우 획득할 수 있는 투자 가치에 일찍이 주목하였다. 러일전쟁 전후에 토지를 집적한 일본인의 토지매수가격을 살펴보면, 일본인 지주의 밀집지대인 군산 부근의 1단보당 가격은 상답 15~20원, 중답 10~15원, 하답 10원 이하였다. 또 전주는 상답 17원, 옥구는 중답 13.5원, 김제는 중답 8.3원이었다. 밭의 경우는 물론 논보다 저렴하였다.⁹⁾ 한국의 매매 지가는 일본 관서지방에 비해 약 10%

9) 日本農商務省編,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慶尙道・全羅道』 1905, 347~348쪽 참조.

에 불과한 것이었다. 1904년 현재 일본의 1단보당 평균 매매 가격은 논 150원, 밭 86원이었다.¹⁰⁾ 즉 일본인은 일본 국내의 토지를 처분하여 한국에 진출하면 토지 면적을 10배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일본상품의 한국 반입과 미국 등의 유출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은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한국의 저렴한 지가와 소작제 농장경영을 통한 고율의 토지수익률은 상업자본가와 지주계층의 토지 매수를 가속화시켰다. 그들은 ‘자본가의 임무’를 내세우며 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임을 자부하였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에서의 토지소유권이 제도적 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자유로운 토지집적의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었다. 가령 대리인 문제와 위조 문건 분쟁은 일본인 지주에게 토지집적의 위협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현실적인 문제는 한국에서 토지소유권의 증명이 제도적으로 불완전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일본은 일본인의 토지소유와 그 소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농업 식민의 기초 작업이라고 간주하였다. 일본이 식민지 경영방침에 따라 토지소유를 합법화하기 위해 ‘부동산증명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은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한 직후부터였다. 당시 구한국 정부는 광무양전의 지계사업을 통해 충청과 강원도의 일부 지방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했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더 이상 시행되지 못하였다.¹¹⁾

군산지역 일본인 지주의 토지 투자를 장려한 각종 선전출판물 가운데에는 토지매수 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경영의 근거지를 정하고 다른 선진경영자와 뒤섞여 충돌하지 않도록 지구 내에서 서둘지도 태만하지도 않도록 매수의 발걸음을 확장하는 데에 있다.”¹²⁾며 무엇보다도 러일전쟁 이전에 한국에 진출한 지주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범위에서의 토지 집적을 권유하고 있다.

당시 일본인 지주의 토지 집적은 저당 즉 고리대를 중심으로 수확 예매와 사용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저당 이외에도 현금

10) 吉川祐輝, 『韓國農業經營論』, 大日本農會, 1904, 131쪽.

11) 金容燮, 『(增補版)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下』, 서울, 一潮閣, 1988 참조.

12) 三輪規, 『富之群山』, 1907, 229쪽.

구입을 통한 한국인 명의의 차용이나 토지사용권의 획득, 그리고 당시 화폐인 백동화의 위조와 인삼의 도취 밀매, 더욱이 곡물거래 시의 부당 양정 등 모든 수단이 동원되었다.¹³⁾ 토지집적의 시기는 “종래부터 방인이 구입하는 기간은 다양해서 일정하지 않다. 수확 10여일 이전에 그 토지를 매각하여 수확물의 절반은 당연히 소작료로 지주에게 제공하였다. 기타 금전에 궁핍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토지를 매매하는 상황이다.”¹⁴⁾고 보고되었다. 개항 이후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이라는 새로운 변동 속에서 일부 한국인은 기존의 생산물 조세방식의 화폐 조세로의 전화, 가내수공업의 파괴에 의한 생활필수품의 구입, 영농자금의 증대 등에 따른 화폐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여 당면한 해결책의 하나로 일본인의 고리대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이용한 일본인의 무리한 토지집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은 당시 토지매매관행에 기본적으로 제약되었다. 당시 토지의 종류는 크게 경지, 휴경지, 황무지, 갈대밭, 염전, 임지, 습지 등으로 분류되었다. 토지 구입은 기간지(既墾地)의 경우에는 종래로부터 소유자가 갖고 있던 문기(文記)를 구입하여 그 사실을 문기에 새로 기입함으로써 이루어졌고, 미간지(未墾地)의 경우에는 스스로 개간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았다. 농민이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당한 황무지를 선택한 다음, 촌락에 다소간의 음주(酒肴料)를 제공하고 동장(村長)의 승낙을 얻어 개간에 착수한 다음, 개간 2년째에는 군아에 수세반별(收稅反別)을 신고하여 확정함과 동시에 군아에 비치된 토지수세대장인 유초(類抄)에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개간자는 그 영수서를 동장에게 제시하고 촌락에 비치된 지세증개대장인 중초(中抄)에 기입함으로써 비로소 토지소유권이 확정되었다. 당시 토지소유권의 표식은 기간지의 경우는 문기, 미간지의 경우는 유초와 중초에 기입된 것과 매년의 납세증명서뿐이었다.¹⁵⁾

13) 이러한 토지집적의 방법에 대해 고베 마사오(神戸正雄)는 “조선에서 거만(鉅萬)의 부를 이룬 자의 이력을 들건대, 시가지의 매수는 비교적 온당한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는 고리대, 백동화 위조, 인삼 도취와 밀매, 곡물의 양목(量目) 사기 등을 통해 부를 일으킨 자이다”(神戸正雄, 『朝鮮農業移民論』, 1910, 30쪽)라고 말하고 있다.

14) 加藤末郎, 『韓國農業論』, 1904, 251쪽.

15) 葛生修亮, 「韓南土地買入上之注意」, 『朝鮮之實業』 21, 1906. 6., 48쪽.

이러한 토지에 관한 관행으로 인해 경지의 매매계약은 먼저 지권(地券)인 구 문기(文記)와 납세증명서 그리고 동장, 지사인(知事人, 世話係), 시존위(時尊位, 年寄頭) 등 촌락의 관리와 문기의 집필자가 보장하는 뜻으로 연명 날인한 새 문기(신매도증)를 구입함으로써 성립되었다. 단 개간이나 문기의 분실로 인해 옛 문기가 없는 경우에는 새로 그 내역을 기록한 새 문기와 납세증명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유권의 인정수속은 먼저 납세기에 신규 소유자가 군청의 도봉소(都捧所, 收稅所)에 출두하여 계약사항을 구두로 유초 기록의 소유자 명의로의 전환을 신청하여 신소유자 명의로 납세한 다음, 신소유자는 그 납세증명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 중초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았다.¹⁶⁾

더욱이 토지집적방식은 일본인이 직접 토지매매 교섭에 나서지 않고, 독점적인 매입자로서 촌락의 대리자를 불러 일방적인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요컨대 “본방인이 나아가 구입을 교섭하지 않았다. 본방인이 토지를 구입할 의지가 있다고 표명할 때는 촌락의 대리자는 경지를 팔려는 자를 대표하여 적게는 몇 십 두락부터 많게는 몇 천 두락을 매도하기 위해 2~3리 혹은 멀리는 5~6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방인 소재지에 찾아와서 매입인을 찾았다. 본방인이 스스로 나아가 땅을 매입하지 않았다.”¹⁷⁾고 서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촌락의 대리자가 ‘경지를 팔려는 자를 대표’하여 일본인과의 토지매매를 교섭했고, 그 과정에서 문기의 빈번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매매의 원인에 대해 당시 일본인 지주 측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한인이 본방인을 바라보면 일본인을 모두 농사경영자처럼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혹은 저당 잡히려는 태도는 마치 어류나 야채류를 팔러 다니거나 혹은 신탄을 파는 것

16) 위의 자료, 48-51쪽.

17) 加藤末郎, 『韓國農業論』, 1904, 249-250쪽. 당시의 토지매매 관행은 일본인이 직접 교섭하지 않고 매매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진강 유역 일본인의 토지매수에 관한 기록은 이를 잘 말해준다. 즉 일본인의 토지집적은 “평야 한가운데 서서 이번에 수천 두락(斗落)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각 마을에 지심(指審)이라는 매매중개인이 있어 2, 3일내에 필요 이상의 물건을 모아 목록을 작성해 온다. 목록에 따라 실지를 답사하여 기름진 토지만을 골라서 매입한다”(井上正太郎, 『東津平野の大觀』, 『東津江流域』 1928, 30-31쪽)는 정황이었다.

과 동일하다. 그들은 문기 목록을 손에 들고 이곳저곳 본방인 사이를 배회하면서 조금이라도 비교적 좋은 상대를 발견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본방인이 싫다고 거류지로 이주해 버리면 그 토지매수자인 것을 표방하거나 또는 농사경영자임을 광고하기도 전에 토지를 매각하거나 혹은 토지를 저당 잡히려는 한인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¹⁸⁾며 한국인의 토지소유의식의 결핍과 전근대적인 토지매매관행에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는 한국인의 적극적인 대응의 모습이 엿보인다. 사실상 국권 상실이라는 식민지화 과정에서 한국 농민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인 농장을 습격하는 등 다양한 대항책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종래의 토지매매관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고가로 더욱이 복수의 일본인에게 팔겠다는 발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 농민은 일본인 지주의 토지매수에 대해 “왜놈은 3백수십년 전 조선을 공격해왔다. 처음에는 승리했지만, 결국에는 패배하여 본국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번도 처음에는 이기겠지만, 결국에는 패배하여 틀림없이 물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아무리 매입한 토지일지라도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다. 그대로 토지를 놔두고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때 다시 토지를 되찾을 수 있지 않는가. 지금 팔아서 금전을 챙기는 것이 이득이다”¹⁹⁾며 대규모 토지를 전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기의 위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아무튼 이중매매라는 혼돈현상은 일본인 지주의 과잉투기열에 기인한 것이고 무리한 토지집적과정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이에 군산지역 일본인 지주는 “단체를 조직하여 상호 분요(紛擾)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중요한 경영의 근거를 확실히 하고 서로 제휴하여 이 업종의 앞길의 개선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생겨 그 방법으로서 농사조합을 조직한다”²⁰⁾고 명기되어 있듯이 일본인 지주 사이의 토지소유권의 조정기관으로서 군산농사조합을 조직하기에 이른다. 군산농사조합은 효율적인 토지매수와 ‘토지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조합원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각 개인별 투자액을 신고하여 자체적으로 토지매수 범위를 결정하

18) 三輪規, 『富之群山』, 1907, 228-229쪽.

19) 藤井寛太郎, 「渡鮮より農場經營着手まで」, 『藤井寛太郎自叙伝』(私家本).

20) 「群山農事組合の起原」, 『月報』 1, 1쪽.

였다. 매수대상지의 지명, 자호, 면적, 지표, 매도자 성명 등을 조합에 비치한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소유권 저장권을 확보하고 이미 구매한 토지에 대해 조합원간의 분쟁을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2. 조직

조합의 발기인은 러일전쟁 이전부터 군산지역을 거점으로 상업 활동이나 대규모 토지를 집적한 미야자키 게이타로(宮崎佳太郎), 고야마 미츠토시(小山光利), 나카니시 조이치(中西讓一), 하라타 마쓰시게(原田松茂),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시마타니 야소하치(嶋谷八十八)이었다. 제1회 창립총회는 1904년 4월 14일 민회 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총 19명이 참가하여 「규약」기초위원으로 나카니시, 고야마, 미야자키를 선출하였다. 같은 달 29일에 열린 제2회 창립총회에서는 「규약」과 「세칙」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규칙」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 목적은 “농사의 개선진흥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증진시킨다”²¹⁾고 규정되어 있지만, 조합 설립의 최대 목적은 “대체로 농사의 개선과 진흥을 도모하는데 있지만, 현재 상무(常務)로 실행하고 있는 일은 조합원이 각자 매수한 지소(地所)를 보관하는 대장에 등록하는 데에 있다. 즉 조합원의 소유지 등기소로 상호 충돌을 피해 피아의 분잡(紛雜)을 피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²²⁾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이중매매를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조합은 이를 위해 먼저 「규칙」에 “조합원이 종사하는 농사조사통계를 만들어 참고할 사항은 이를 조합원에게 통보한다”,²³⁾ “조합원 소유 혹은 저장 토지대장을 구비하여 대장에 등록함으로써 그 소유권 혹은 저장권을 확보한다”,²⁴⁾ “토지대장은 등록과 등록 취소 때마다 이사청에 신고한다”,²⁵⁾ “조합원이 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침해받을 때는 본 조합이 그 권리를 옹호한다”²⁶⁾는 항목을 각각 설정하여 토지등록업무를 개시하였다. 요컨

21) 「規則」 제3조.

22) 三輪規, 『富之群山』, 1907, 139-140쪽.

23) 「規則」 제10조.

24) 「規則」 제11조.

25) 「規則」 제12조.

26) 「規則」 제13조.

대 조합은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이를 이사청에 신고함으로써 조합원의 토지소유권을 공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매수한 토지의 이명(里名), 자호(字號), 면적, 사표, 매주의 씨명 등을 조사 등록하여 조합원에게 열람시키는 방법으로 이중매매의 폐해를 방지하였다.

조합원의 등록사항에 개해서 「세칙」에는 “조합원은 소유 혹은 지당권을 지닌 토지를 조합 토지대장에 등록하기 위해 한 장 혹은 한 점당 다음 각항을 상세히 기록한 통지서를 조합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²⁷⁾고 규정하였다. 통지서에는 토지종별(논, 밭, 거친밭, 갈대밭, 황무지, 습지, 산지, 택지, 가옥, 염전의 구분), 두락수, 결세액, 소재지(토지소재의 군, 면, 동, 리, 평, 각 호자 및 거주지명), 구 소유주의 주소와 성명을 기입하였다.²⁸⁾

조합원의 자격은 “군산 이사청 관할 내에서 농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으로 한정한다”²⁹⁾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조합원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토지등록면적과 진출지대에 따르면(표1 참조), 비옥한 기간지대(논, 밭)를 중심으로 토지를 집적하였다. 말하자면 기간지형 지주를 중심으로 미간지대(거친밭, 갈대밭, 황무지)의 개간과 간척사업을 농장경영의 방침으로 삼은 이른바 미간지형 지주로 구성되었다. 이 때문에 이후 군산농사조합은 기간지형 지주가 주도한 기간지에서의 품종과 비료의 개량시험을 목적으로 수원농사시험장 지소의 개설문제를 둘러싸고 수리관개시설의 조기 조사를 주장한 미간지형 지주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조합 내부에는 의견 충돌도 일어났다.³⁰⁾ 그러나 설립 단계에서 양 유형의 지주는 이

27) 「細則」 제1조.

28) 통지서 사본은 日本農商務省編,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道・忠清道・江原道』 1905, 738쪽.

29) 「規約」 제4조. 당시 군산이사청의 관할구역은 행정구역 분할 이전의 전라도 북부 일대와 충청도 남부 일대이었기 때문에 군산농사조합의 조합원은 전북 전주, 남원, 고부, 김제, 태인, 익산, 임피, 금구, 함열, 부안, 무주, 순창, 임실, 진안, 만경, 옥구, 정읍, 용담, 운봉, 장수, 구례, 충남 남포, 비인, 서천, 한산, 보령의 지주가 대상이었다.

30) 조합은 1905년 8월 조합장 나카니시를 중심으로 군산에 수원농사시험장 지소의 개설을 통감부에 청원할 것을 결의했으나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와 같은 미간지형 지주의 조합원은 “수원의 농사시험장 지소를 군산에 개설하려는 청원은 분명 좋은 계획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농사시험장과 같은 것은 자기가 경영하는 농장에서 각자 노력하면 될 일이다. 왜 이런 일에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생각건대 우리 국책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는 일보다 시급한

미 확보한 토지소유권과 저당권 등에 관한 법적 소유를 최우선으로 중시했기 때문에 조합 창립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녔다. 조합설립 단계에서 일본인 지주는 무엇보다도 한국인 측의 반일행동과 이중매매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조합 조직은 조합장 1명, 간사 2명, 평의원 12명을 두고 임기는 1년(중임 가능)이었다. 의결기관으로는 조합 총회와 평의원회가 설치되었는데, 평의원회는 “조합원의 쟁의와 기타 일상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평정의결”³¹⁾하고 조합원의 “권리 옹호를 위한 청구가 있을 때는 평의원회가 곧바로 위원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³²⁾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조합장과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평의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간사는 조합장의 보좌역할을 수행하였다. 더욱이 조합에는 명예고문 제도가 있었는데 주로 농사전문가를 임명하였다.

설립 당시의 조합장은 나카니시 조이치(中西讓一), 평의원은 시마타니 야소하치(嶋谷八十八), 하라타 료하치(原田良八), 고야마 미츠토시(小山光利), 하라타 마츠시게(原田松茂),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미야자키 게이타로(宮崎佳太郎), 가사이 겐타로(笠井建太郎)이었다. 간사는 가사이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1905년 3월의 임원 재선출의 결과, 조합장은 미야자키, 평의원은 나카니시, 시마타니, 하라타, 고야마, 하라타,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사이를 선출하였다. 간사는 사토가 임명되었다. 또 1906년 3월 총회에서는 조합장으로 사토, 평의원으로는 미야자키, 시마타니, 다나베 히로시(田辺浩), 가사이, 구마모토, 노지리 야스시(野尻安), 이마이 조지로(今井讓次郎)를 각각 선출하였다. 간사는 사토가 연임하였다. 조합 임원은 조합 발기인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조합의 재정은 매기의 분담금으

것은 없다. 수리사업은 여러 사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업이다. 학식과 경험 두 면에서 노련한 전문가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번에 수리관계의 기본 조사를 맡길 기사 파견을 청원하는 일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며 나카니시에게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양 유형의 충돌은 기간지대와 미간지대라는 토지집적지대의 차이에 따라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농장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保高正記, 『郡山開港史』, 1925, 29, 119-120쪽).

31) 「規約」 제8조.

32) 「細則」 제6조.

로 운영되었는데 각 지목별 분담금은 논밭은 1두락 당 1리 5모, 거친밭, 갈대밭, 황무지는 10두락 당 1리, 산지는 1필지 당 1전, 가옥은 1채당 2리 5모, 염전은 1고 당 2리였다.³³⁾

이상과 같이 한국강점 이전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는 이중매매에 따른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매수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농사조합이라는 이익단체를 조직하였다.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정은 국가, 현, 개인(회사)이라는 진출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군산농사조합은 개인 레벨의 지주가 매수 대상지를 집단적으로 조정하면서 매수 이후의 등록업무도 수행한 이른바 토지등기소 역할을 수행하였다.

Ⅲ. 군산농사조합의 활동

1. 토지등록업무

조합은 먼저 토지집적과정에서 속출한 한국인과의 충돌 위험을 강하게 느끼고 그 대응책을 관련 측에 요구한다. 1904년 11월 25일 조합은 “군산 지방 농사의 발전에 따라 내지 재주자 본방인 농업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들 내지 재주자는 한인의 박해를 받아 생명재산 상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각지에 속발하여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³⁴⁾는 취지의 ‘내지 재주 본방 농업자 보호의 건’을 일본중앙정부와 공사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각지에는 헌병과 경찰주재소가 설치되어 조합은 토지매수를 위한 무력적인 안전장치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군산지역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는 이익단체로서 군산농사조합을 설립했지만, 1905년 4월 강경지역에도 동일한 성격의 강경토지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에 양 조합은 관할구역이 서로 중복되었기 때문에 각자 관할구역과 등록사무의 이관을 도모하여 연합조직으로서 군산토지연합조합을

33) 「細則」 제8조. 1906년도부터 논과 밭의 분담금은 2리로 증액되었다.

34) 「内地在住者保護の請願」, 『月報』 1, 2쪽.

조직하였다.

강경토지조합의 설립에 대해 군산농사조합은 4월 19일 평의회회를 개최하여 “그 등록구역은 우리 군산농사조합의 등록지구와 동일하여 군산영사분관의 관할지를 포괄하고 있다. 동일한 구역 내에 두 개의 토지등록소가 생겨나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분쟁이 생겨날 원인이 될 염려가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³⁵⁾며 강경토지조합의 인가 취소를 영사분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요코타(横田) 분관 주임은 두 단체의 연합을 주장하여 쌍방 대표자의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5월 22일 강경토지조합의 마즈나가(松永), 후지자키(藤崎), 아사노(淺野), 군산농사조합의 미야자키(宮崎), 나카니시(中西), 고야마(小山), 사토(佐藤), 시마타니(嶋谷), 구마모토(熊本)는 “양 조합 사이에 등록 지구를 구획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양 조합은 연합규약 아래 협동하여 공통의 이익을 도모한다”³⁶⁾는 것에 합의하여 다음 날 강경토지조합장 사카가미 데이신(坂上貞信)도 참가하여 연합조합규약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결과 군산농사조합은 5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군산토지연합조합설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군산토지연합조합은 7월 26일 연합조합평의회를 개최하여 ‘군산토지연합조합규약 및 세칙’을 협정함과 더불어 다다(多田) 분관주임을 연합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³⁷⁾ 이에 따라 군산농사조합은 종래의 「규칙」과 「세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또 대표자회에서는 영사분관에 “양 조합에 이미 등록을 마친 소유권 또는 저당권에 관해 앞으로 이의가 생겨 영사분관에서 이를 재결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의견을 자문해야 한다”³⁸⁾는 것을 요구하여 조합의 이익을 확보하였다. 이 결과 양 조합 사이에는 등록지구의 분할 작업이 이루어져 등록사무가 인계되었다. 예를 들어 군산농사조합의 대표적인 지주인 후지이 간타로(藤井寛太郎)의 소유지 일부(은진군 348두락, 어

35) 「對江景土地組合問題」, 『月報』 1, 3쪽.

36) 위와 같음.

37) 1907년에는 군산토지연합조합의 조합장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조합장은 이마노 기노스케(天野喜之助), 평의원은 사토 세이지로(佐藤政次郎), 다나베 히로시(田辺浩), 사카가미 데이신(坂上貞信), 마즈나가 데이지로(松永定次郎)이었다(三輪規, 『富之群山』, 1907, 205-251쪽).

38) 「連合組合評議員會」, 『月報』 1, 4쪽.

성군 123두락, 여산군 125두락, 석성군 211두락, 공주군 419두락)은 분할작업을 통해 군산농사조합으로부터 강경토지조합으로 이관되었다.³⁹⁾

또 『월보』에는 조합 공시사항으로 매월 조합에 가입한 신입회자와 탈회자의 추이, 조합원의 출신 부현별 조사표, 등록지소 일람표 등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에는 일부 매도인의 씨명도 게재되었다. <표 1>은 조합의 토지등록면적과 조합원수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각 지목별 소유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투자총액은 설립 당시 249,829원에서 1910년 8월 현재에는 961,608원에 달했고, 조합원 수도 45명에서 196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는 조합원 등록토지의 각 군별 분포를 나타낸다. 조합의 소유지는 전북의 평야지대인 옥구, 임피, 익산, 만경을 중심으로 충남에까지 분포하고 있다.

<표 1> 군산농사조합의 토지등록면적과 조합원

	논	밭	황무지	산림	가옥	염전	총가	조합원
1904년 5월	24,644	484	1,171	9	-	-	249,829	45
1904년 12월	83,900	2,750	3,933	22	-	-	653,590	73
1905년 12월	111,510	5,875	4,998	24	-	-	940,702	99
1906년 12월	144,783	11,479	7,178	75	1,485	799	1,303,552	125
1907년 12월	169,161	21,434	9,078	115	2,436	1,170	1,386,344	165
1908년 12월	192,940	25,960	11,200	176	2,640	1,170	1,643,135	188
1909년 12월	204,737	26,157	12,293	176	2,640	1,170	1,763,317	196
1910년 8월	184,737	26,157	12,293	165	2,426	949	1,961,608	196

자료: 「群山農事組合概況」, 『朝鮮視察資料(全羅北道之部ノ二)』, 1910.

<표 2> 군산농사조합 등록지의 군별 분포(1910년 8월 현재)

	논	밭	황무지	가옥	산림	염전
옥구	19,180	1,750	2,010	333	43	949
임피	40,575	5,140	2,445	721	36	-
익산	46,641	9,882	3,838	1,075	67	-
김제	33,842	2,782	717	96	5	-
만경	13,105	2,434	871	102	12	-
함열	823	508	1,130	9	-	-
금구	5,601	271	-	-	-	-

39) 「江景組合へ引継ぎたる登録事務」, 『月報』 1, 6쪽.

고부	9,997	448	79	-	-	-
부안	5,248	123	14	57	2	-
태인	5,317	2,125	-	-	-	-
전주	3,308	625	-	-	-	-
석성	233	-	-	-	-	-
은진	1,596	24	-	-	-	-
공주	419	-	-	-	-	-
임천	40	15	1,180	25	-	-
어성	123	-	-	-	-	-
여산	450	12	2	-	-	-
부여	4	-	-	-	-	-
한산	5	5	-	-	-	-
서천	200	14	14	10	-	-

자료: 『群山農事組合概況』, 『朝鮮視察資料(全羅北道之部ノ二)』, 1910.

<표 3>과 <표 4>는 조합원의 출신 부현별 분포와 유력한 토지등록자(50정보 이상)의 소유면적을 나타낸다. 조합원 196명 가운데 그 대부분은 구마모토(熊本), 야마구치(山口),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나가사키(長崎)를 중심으로 한 서일본 출신자이고, 도쿄와 다른 현 출신자도 포함되어 있다. 또 토지등록자를 보면 크게 일본 국내의 자본가(재벌)과 화족, 재조 일본인 상인, 일본 국내의 지주와 상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20년대 이후에 작성된 전북지역 지주명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지주가 대부분 망라되고 있다.⁴⁰⁾ 이는 일본인 대지주의 한국 진출이 이미 한국강점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표 3> 군사농합조합의 출신 부현별 조합원수

	조합원수		조합원수		조합원수		조합원수
熊本縣	33	三重縣	6	群馬縣	3	福井縣	1
山口縣	33	京都府	6	大分縣	3	愛媛縣	1
廣島縣	16	新潟縣	5	石川縣	3	長野縣	1
大阪府	14	和歌山縣	5	岐阜縣	2	埼玉縣	1
長崎縣	14	岡山縣	5	德島縣	2	北海道	1
東京府	10	愛知縣	4	靜岡縣	1	鳥取縣	1
兵庫縣	8	鹿兒島縣	4	滋賀縣	1	福島縣	1
福岡縣	6	佐賀縣	4	島根縣	1	합계	196

자료: 『群山農事組合概況』, 『朝鮮視察資料(全羅北道之部ノ二)』, 1910.

40) 全羅北道農務課, 『內鮮人地主所有地調』, 1930.

<표 4> 군산농사조합의 토지등록자와 소유면적(1910년 8월 현재)

씨명	대리인	논	밭	합계
大倉喜八郎	田中一熙	2,404.0	9.3	2,413.3
細川護成	黒田二一	891.5	90.5	982.0
藤井寛太郎		840.0	66.1	606.1
大隅與一	技吉元信	769.1	10.7	779.8
楠田義達		474.6	10.0	484.6
眞田茂吉		418.0	47.3	465.3
榊富安左衛門		318.3	52.4	370.7
川崎藤太郎		315.2	53.4	368.6
中柴万吉		285.3	74.6	359.9
宮崎佳太郎		349.9	6.7	356.6
嶋谷八十八		260.2	61.1	321.3
本山彦一	熊本利平	190.3	54.7	245.0
前田恒太郎	大森五郎吉	209.7	6.7	216.4
兒嶋大吉		178.4	39.0	217.4
藤田俊一	橋本央	202.3	0.0	202.3
大森五郎吉		194.9	3.5	198.4
熊本利平		156.9	26.0	182.9
田中長三郎	熊本利平	164.0	0.0	164.0
今村一次郎		97.4	53.7	151.1
高田トミ	佐藤福太郎	149.7	0.0	149.7
松永安左衛門	熊本利平	144.3	0.0	144.3
金子圭助	大村東次郎	124.9	0.0	124.9
木庭璞也		114.2	7.5	121.7
吉田永三郎		107.5	12.6	120.1
佐分煩一郎	熊本利平	120.0	0.0	120.0
牛場卓藏	熊本利平	114.5	0.0	114.5
井上工一		64.9	15.5	80.4
岩下清周	熊本利平	103.7	0.0	103.7
大池忠助		100.7	0.0	100.7
高久敏夫	岡田瀧次郎	97.9	0.3	98.2
林龍太郎	熊本利平	97.4	0.0	97.4
甲斐只雄		85.3	2.5	87.8
藤本清兵衛	熊本利平	84.5	0.0	84.5
片桐和三		63.1	20.8	83.9
橋本央		68.6	2.8	71.4
相川藤平	岡田瀧次郎	60.0	0.0	60.0
森久商會	森井龜之助	68.0	0.5	68.5
森谷元一		50.5	13.3	63.8
本松光雄		55.6	4.3	59.9

猿凡又左衛門	佐藤福太郎	57.5	0.0	57.5
鈴木樹次郎	熊本利平	55.2	0.0	55.2
梶原貞三郎	森谷元一	55.0	0.0	55.0
益田安雄	宮崎林六	37.0	16.7	53.7
細川清若		47.6	2.9	50.5
田坂佐三郎		47.8	2.5	50.3
笠井建二郎		47.3	2.7	50.0

자료: 『群山農事組合概況』, 『朝鮮視察資料(全羅北道之部ノ二)』, 1910.

<표 4>에는 토지등록자의 대리인이라는 항목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대리인이란 타 자본가의 토지를 대신해서 매수할 경우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소작제농장경영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일본인 지주는 농장경영의 이익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예를 들어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처럼 일찍이 한국에 진출한 사람이나 한국사정에 정통한 일본인 지주에게 위탁경영을 의뢰한 사례가 많았다. 이 시기에 토지를 집적한 일본인 지주의 특징은 앞서서도 말한 대규모 토지소유자가 많았다는 점과 또 일부에서는 곧바로 농장경영에 착수하지 않고 수익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일본인 지주에게 위탁경영을 의뢰한 점이다.

2. 농장경영

조합은 설립 본래의 목적인 매수지의 등록업무 이외에 합리적인 농장경영을 위한 활동도 펼쳐나간다. 먼저 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소작제 농장경영상의 각종 정보의 교환을 위해 농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강사로는 5월 28일 농상무성 기사 안도 히로타로(安藤廣太郎), 하야시 단사쿠(林彈作), 7월 22일에는 오사카마이니치신문사 사장 모토야마 히코이치(本山彦一), 군산영사분관 주임 다다(多田) 등을 초대하였다.

또 조합은 1904년 12월 12일 일본 국내에서 수입세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수입곡물세안 부결 진정서’를 귀족원과 중의원 양원의 각 의원에게 발송하였다. 조합원은 토지매수에 의한 농장설치와 소작제 농장경영을 통해 징수한 소작미의 반출에 토지경영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진정서」의 내용은 “제21회 제국의회에 제출된 수입곡물세 증징안은 재한 농업자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일한무역에 다대한

장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본방 내지의 대다수 국민은 증정의 결과 거액의 부담을 증가하는 것으로 매우 적합하지 않은 정세이다⁴¹⁾는 것으로 조합은 각지의 상업회의소 등에도 동일한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여 반대운동을 펼쳐나갔다. 그리고 조합은 상업회의소연합회가 주도한 곡물수입세 폐지운동에도 경비의 분담금으로 30원을 지출하였다.⁴²⁾

더욱이 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경작 재배하는 농산물의 전분을 조합사무소에서 수집 보존하고 구매조합을 조직하여 농산물의 종자, 농구, 비료 등도 공동 구매하는 등 합리적인 소작제농장경영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월보』에는 조합원의 농장경영 상황과 농황을 게재하였다.⁴³⁾

이처럼 조합은 토지등록사무 이외에도 농담회의 개최와 농업계의 동향 등을 전달했지만, 조합 활동의 최대 목적은 어디까지나 토지소유권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었다. 즉 “조합에서는 시종일관 등록사무를 정돈하여 조합원의 소유권과 저당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⁴⁴⁾는 기술은 이중매매를 사전 방지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조합의 중심적인 활동내용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토지소유권의 획득 이후 조합은 효율적인 소작제농장경영을 위한 정보도 교환했지만, 그보다 오히려 한국인의 강렬한 저항을 근저로부터 억압하는 것이 급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합 활동의 배경으로는 조합원의 소유지가 비옥한 기간지를 중심으로 분포되었기 때문에 조합원의 대다수는 다액의 비용이 필요한 수확물의 증산을 장려하기보다 소작인으로부터 확실한 소작미를 징수하는 방침이 이익이었다.

이러한 조합의 방침은 한국농업과 농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지주는 일본농업의 뛰어난 농법을 한국에 도입하여 한국농업을 발달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는 비료시비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즉, “종래 우리 방인의 대다수는 한인의 농업이라면 철두철미하게 줄릴하다며 이를

41) 「輸入穀物稅案否決陳情書」, 『月報』 1, 2쪽.

42) 「輸入穀物稅廢止運動事件」, 『月報』 2, 9쪽.

43) 게재항목은 농장소재지, 온도(최고, 최저, 평균), 날씨(맑음, 비), 강우량, 증발량, 수전 관개수 실황, 수전의 제조(회수, 시기), 수전 시비(회수, 종류, 분량, 비교성적), 수전 병충해(종류, 발생시기, 구제법, 피해도), 도작 성적(전년비교, 평년비교, 비의 종류성적) 등이었다(『月報』 1, 9-10쪽).

44) 「農談會」, 『月報』 1, 4쪽.

완전히 배격하고 근저로부터 일본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점차 한국의 농사에 정통해짐에 따라 한인의 농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작년과 금년의 성적을 보더라도 대개 본방 농부가 경작한 미전은 오히려 한인의 그것보다 못해 보인다. 앞으로 다년간 우리 농부가 연구에 게을리 하지 않고 실험을 쌓은 다음에는 몰라도 지금은 수완이 도저히 한인 농부를 따라갈 수 없다고 단언하더라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등한시해온 한인의 농법을 점차 충실하게 연구할 필요를 느낀다”⁴⁵⁾는 기술은 기존의 한국농업에 대한 무지와 편견과는 다른 인식으로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정과 이민사업의 실패에 따른 소작제 농장경영으로의 전환이라는 구도를 고려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합은 등록사무를 촉진함과 동시에 소작제 농장경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과 한국인 농가의 경영상황에 대해 “본방 농부의 성적이 한인에 비해 오히려 열등하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본방 농부는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의 농사를 그저 유치한 것으로 오해하여 암묵적으로 고국의 원예적 농법을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 제초에 있어서 본방 농부는 완전히 무능하다. 본방 방식의 제초는 한국처럼 잡초가 만연한 수전에서는 거의 아무런 효능이 없다. 요컨대 본방 농부는 앞으로 수년간 배워 숙달하지 않으면 그들이 희망하는 것과 같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⁴⁶⁾는 사토 세이지로(佐藤政次郎)의 ‘고백’은 일본인 지주가 소위 ‘선량한 일본인’의 도입에 의한 자작경영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국인 소작농에 의한 소작제 농장경영으로 방향을 전환하던 정황을 잘 나타낸다. 이에 조합은 이익제일주의에 의거하여 철저한 소작미 징수를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소작쟁의에 공동 대응해나간다.

3. 소작쟁의대책

조합의 주요 활동이 토지등록업무로부터 합리적인 소작제농장경영을 위한 정보전달이라는 방침으로 전환됨에 따라 『월보』에는 토지등록사항에

45) 熊本利平, 「韓人の農法と肥料の鐵乏に就て」, 『月報』 3, 1쪽.

46) 佐藤政次郎, 「本年度の米作成績」, 『月報』 3, 12-13쪽.

관한 기사만이 아니라, 점차 토지매수 이후의 농장경영과 구역 내의 소작인 대책에 관한 기사가 늘어갔다. 예를 들면 1905년 10월 구스다농장(楠田農場)에서 소작료 산정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과의 충돌에 대해 『월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⁴⁷⁾

지난 10월 13일 조합원 구스다 요시다츠(楠田義達)는 임피군 접산리(蝶山里)에 있는 농장에 출장하여 일단 순찰한 다음, 다음날 14일 소작인과 본년도 소작비에 대해 협의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많은 소작인이 몰려들어와 처음부터 온갖 구실을 들어 부당한 요구를 강청하였다. 이에 구스다는 그들에게 별다른 훈계를 하지 않았지만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다음날에 이르러 소작인들은 오히려 더 많이 몰려들어 복을 치면서 기세를 올렸다. 수백 명이 무리를 이루어 불온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들이 구스다의 집에 침입하여 욕설과 난폭을 일삼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본 조합은 18일 임시평의원회를 개최하여 동 석상에서 구스다의 구두진술을 듣고 협의한 끝에 당국자의 응급처단을 촉구하기로 결정하였다. 평의원 일동은 영사분관에 출두하여 여러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였다. 당국에서도 불온한 정보를 접하고 한국경찰서와 교섭하여 본방 경관 5명과 한국순사를 모두 출동시켜 같은 날 곧바로 출동하여 관계자 두민(頭民) 이하 2~3명의 중심인물을 포박하여 경찰서로 돌아왔다.

소작쟁의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자료상 주로 3.1운동 이후의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된 쟁의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⁴⁸⁾ 이미 이 시기에도 소작쟁의가 활발히 전개된 사실은 흥미롭다. 구스다 농장의 사례는 한국강점 이전의 소작쟁의의 전개양상, 그리고 군산농사조합 평의원회와 관련 측의 대응책 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또 조합은 조합구역 내에서의 소작쟁의에 공동으로 대응했지만, 1906년 2월 나카니시 농장(中西農場)에서의 소작인에 의한 농장사무원 폭행사건에

47) 「楠田農場に於ける不穩事件の落着」, 『月報』 3, 21 쪽.

48) 예를 들면 大和和明, 「一九二〇年代前半期の朝鮮農民運動」, 『歷史學研究』 502, 1985; 大和和明, 「朝鮮農民運動の轉換点」, 『歷史評論』 422, 1984; 이준식, 『농촌사회변동과 농민운동』, 서울, 민영사, 1993;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서울, 해안, 2002; 홍영기, 『192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등을 참조.

대해서도 소작인의 취체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군산농사조합 평의원회가 간사인 사토 세이지로 명의로 2월 13일 군산이사청에 제출한 청원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⁴⁹⁾

지난 1월 23일 본 조합의 나카니시 조이치(中西讓一) 농사사무소의 출장원 유카미 요시타로(湯上吉太郎)와 기무라 가이치(木村改市) 두 명에 대해 옥구군 원정리(元政里)의 소작인들이 가한 폭행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임으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촌락의 모든 소작인 수십 명이 협동하여 도조(賭租)를 태납할 뿐만 아니라, 지주의 대표자인 출장원에 대한 온갖 협박과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기무라는 다행스럽게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유카미는 중상을 입어 반사반생의 모습이 되어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고 있지 못할 정도로 사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폭동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분을 단행하여 곧바로 선후(善後)의 방법을 실행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처분을 가볍게 하거나 늦추면 군산방면의 농사발전의 추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급한 조사를 통해 폭행자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단행하고 앞으로의 모범으로 삼아 군산방면 농사의 발전에 장애가 초래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군산농사조합은 농장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의병의 진압을 위해 통감부에 진압병력의 증원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송부하였다. 1907년 11월 18일 조합은 상공회의소와 민단 합동으로 “폭도가 전주평야 각지에 출몰하여 농사경영자는 물론 행상자가 심각한 위협에 빠져 상업은 거의 단절되었다. 현재 수비 병력으로는 치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신속히 병력을 증파하여 보호해주시기를 바란다”⁵⁰⁾는 청원서를 이토 히로부미 통감 앞으로 보냈다.

이상 구스다 농장과 나카니시 농장의 사례 그리고 치안확보를 파병요청의 청원은 군산농사조합이 설립 직후의 토지등기소적인 역할에서 점차 소작제농장경영을 위한 정보교환, 특히 소작쟁의 등 한국인의 저항에 공동 대응하는 단체로 성격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감부가

49) 「小作韓人暴行事件に關する請願書」, 『月報』 5, 10-11쪽.

50) 「全州各地出沒暴徒鎮定策トシテ増兵派遣要請ノ件 (『來電第67號』)」, 1907. 11. 18.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을 한국정부에 강요함으로써 조합 설립 당초 최대의 불안정 요소였던 토지소유권의 법적 보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일본인 지주가 추구한 자작경영(또는 이민유치)에 의한 ‘한국농업의 일본화’가 앞서에서도 지적한 농경지의 지질, 농법, 기후 등의 차이로 실패하여 농장경영의 방침이 한국인 농가의 사역에 의한 소작제 농장경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장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작쟁의에 대한 집단대응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다.

IV. 맺음말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한국침략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 군사, 사회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통감부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분출한 의병운동을 철저히 탄압하면서 기존의 권력 기구를 통감부 권력 밑으로 종속시킴과 동시에 사회경제적으로는 화폐정리사업과 역둔토조사사업 등의 실시를 통해 한국사회의 경제시스템을 재편성하였다. 이러한 한국사회경제의 재편성 과정은 ‘새로운 영토’ 즉 한국에서 고을의 이익을 올리려는 일본인 상인과 지주 계층의 급속한 한국 진출과 하나가 되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정은 국가, 현, 민간 등 다양한 진출 주체에 따라서, 또 기간지대와 미간지대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매매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산농사조합은 기간지형 지주가 당시 토지집적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이중매매를 조직적으로 방지하면서 토지소유권과 저당권 등을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조합은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투자 역량을 토지구입 이전에 신고의 형태로 파악한 다음, 그에 따른 토지매수의 범위를 결정하고 매수 대상지의 지목, 두락수, 결세액, 토지소재지, 매주의 씨명 등을 조사 등록하여 조합원에게 열람시켰다. 그러나 조합의 활동은 토지소유권 제한의 철폐를 계기로 초기의 토지등기소적인 역할에서부터 점차 매수 이후의 소

작제 농장경영을 위한 상호정보교환과 소작쟁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변모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당초 설립 목적이었던 토지소유권의 법적확인 문제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의 공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상호간의 충돌원인으로서의 토지집적 범위의 조정 작업도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조합은 한국강점에 의한 무단통치체제의 확립과 ‘토지조사사업’의 시행을 통해 그 본래의 존재의의가 차츰 소멸되어 결국 해산을 맞이한다. 조합 해산의 정확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토지등록면적이 1910년 8월 말까지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한국강점 전후의 시기까지 존속되었다. 그리고 해산 이후는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최종적인 법적확인과정을 거치면서 농회 조직으로 편입되었다. 다수의 조합원은 이후에도 한국농업계의 중진으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약하고 있고, 많은 멤버가 한국중앙농회에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조합은 점차 농회로 흡수되었다고 판단한다.

‘토지조사사업’의 목적은 일본인 지주의 토지소유권만이 아니라, 일부 한국인 지주의 소유권도 법적으로 확인시킴으로써 식민지 지배 권력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작용했는데, 농회에는 한국인 지주도 새로운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일본인 지주는 지역 단위에서 합리적인 소작제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 이후 한국인 지주를 동일단체에 포섭하고 소작쟁의 등 소작인 측의 저항에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군산농사조합의 설립부터 해산에 이르는 활동은 한국강점 전후의 일본인 지주의 토지집적과정과 소작제농장경영의 추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군산농사조합은 개항장을 기반으로 내륙의 토지를 집적해 나가던 일본인 지주들이 한국인의 다양한 토지 매수 방해 활동을 모면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매수와 농장 경영을 도모하려는 교육지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의 보장, 농업경영정보 공유, 그리고 소작쟁의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활동이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사료

- 外務省, 「對韓方針並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日本外交文書』 37-1, 1904.
 吉川祐輝, 『韓國農業經營論』, 大日本農會, 1904.
 加藤末郎, 『韓國農業論』, 1904.
 日本農商務省 編,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慶尙道・全羅道』, 1905.
 群山農事組合, 『月報』 1~5, 1905~1906.
 三輪規, 『富之群山』, 1907.
 統監府農商工部農林課, 『韓國ニ於ケル農業ノ經營』, 1907.
 『朝鮮視察資料(全羅北道之部ノ二)』, 1910.
 全羅北道農務課, 『內鮮人地主所有地調』, 1930.

2. 연구서

- 주봉규, 『근대 지역농업사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홍성찬 편, 『일제하 만경강 유역의 사회사-수리조합, 지주제, 지역 정치』, 서울, 해안, 2006.
 하지원, 『일제하 식민지 지주제 연구-일본인 회사지주 조선농업주식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해안, 2010.
 이준식, 『농촌사회변동과 농민운동』, 서울, 민영사, 1993.
 조성운, 『일제하 농촌사회와 농민운동-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서울, 해안, 2002.
 홍영기, 『1920년대 전북지역 농민운동』,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東京, 御茶の水書房, 1968.
 淺田喬二, 『(増補)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東京, 龍溪書舎, 1989.
 李圭洙, 『近代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と農民運動』, 東京, 信山社, 1996.

3. 논문

- 田中喜男, 「石川縣農業株式會社(資料紹介)」, 『北陸史學』 15, 1967.
- 田中喜男, 「明治後期『朝鮮拓殖』への地方的關心-石川縣農業株式會社の設立を通じ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4, 1968.
- 山崎隆三, 「地主制衰退期における一小地主の植民地地主への轉化」, 『經濟學雜誌』 64-23, 1971.
-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存在形態-石川縣農業株式會社の事例分析-」, 『朝鮮歷史論集 下』, 東京, 龍溪書舍, 1979.
- 森元辰昭, 「日本人地主の植民地(朝鮮)進出-岡山縣溝手家の事例-」, 『土地制度史學』 82, 1979.
- 森元辰昭・田中愼一, 「朝鮮土地經營の展開」, 大石嘉一郎編, 『近代日本における地主經營の展開』, 東京, お茶の水書房, 1985.
- 大和和明, 「朝鮮農民運動の轉換点」, 『歷史評論』 422, 1984.
- 大和和明, 「一九二〇年代前半期の朝鮮農民運動」, 『歷史學研究』 502, 1985.
- 千田稔, 「華族資本としての細川家の成立・展開」, 『土地制度史學』 116, 1987.
-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變貌過程(上)」, 『農業總合研究』 19-4, 1965.
- 淺田喬二, 「舊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變貌過程(下)」, 『農業總合研究』 20-1, 1966.
- 裴民植, 「韓國・全羅北道における日本人大地主の形成-群山農事組合を中心に」, 『農業史研究』 22, 1989.
- 李圭洙, 「日本人地主の土地集積過程と群山農事組合」, 『一橋論叢』 116-2, 1996.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 yigs0205@hanmail.net)

주제어: 군산농사조합, 군산농사월보, 일본인 지주, 식민지 지주제, 농촌 사회

논문투고: 2015.08.20. 심사완료: 2015.09.21. 게재확정: 2015.10.12.

<Abstract>

Japanese Landowners' Advance to Korea after the
Russian-Japanese War
- on the focus of 『Kunsan's Agriculture Monthly Report』 -

Yi, Gyu-Soo

In this thesis,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andowner's land accumulating process through inspecting the establishing process, concrete activities, and dissolution process of Kunsan agricultural union. Focusing on 『Kunsan's Agriculture Monthly Report』 which Kunsan agricultural union published, I analyzed the land possessing practice of that period, the problem of double purchase, the sight Korean peasants looked at the Japanese land owner, Japanese land owner's evaluation about Korean agricultural method, etc. Beyond traditional point of view like Japanese landowners' illegal agricultural invasion, I would like to confirm the concrete procedure of Japanese landowner's land accumulation and tenant land management based on rascal economic interest.

Japanese landowner's land accumulating process was carried out in a national, regional and civilian dimension and through illegal purchasing method to the cultivated land and uncultivated land. The landowners of cultivated lands organized Kunsan agricultural union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ouble purchase systematically and securing the rights of land possession and mortgages.

To prevent the land double purchase, Kunsan agricultural union confirmed the investing capacity of union member before land purchase, decided the coverage of land purchase and showed the buyable land state to union member. Since land ownership restrictions have been abolished, Kunsan agricultural union was transformed the role of land registry office

into the organization for information exchange of farm managing and for co-responding against tenant disputes.

The whole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to the dissipation of Kunsan agricultural union showed the land accumulating process of Japanese landowners and the transition of tenant farm management most clearly. In conclusion, Kunsan agricultural union was a desperate method to evade Koreans' preventing action against land purchase, and to carry out stable and reasonable land purchase and farm management.

Key Words: Kunsan agricultural union, Kunsan's Agriculture Monthly Report, Japanese landowner, colonial landownership, agricultural society